



#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

2025. 7. 23.

---

자본시장연구원  
황세운 선임연구위원

---

#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

## ○ 디지털 결제수단

- ▶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: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24시간,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며, 기존 금융망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
- ▶ 소액결제 및 국제송금에 활용: 국내 소상공인 결제, 해외송금, 해외직구 등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
- ▶ DeFi(탈중앙화 금융)의 핵심 인프라: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보, 이자 지급 등 핵심 기축 자산 역할을 담당
- ▶ NFT, 게임, 메타버스 등과 결합: 가상자산 기반 산업에서 안정적인 화폐 역할을 하며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 간 연결고리가 됨

## ○ 통화주권의 유지

- ▶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(USD) 기반이며,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음
  - CBDC는 중앙 집중형,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주도 분산형
- ▶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(KRW-backed stable-coin)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

# 스태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

- 스타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체계 확립
  - › 담보형으로만 도입(법정통화(원화)에 가치가 연동되는 방식)
-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마련
  - › 발행인 자격요건의 설정(인가 vs 등록), 준비자산 예치의무 등
-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
  - › 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장치 명문화, 시장투명성 확보, AML, KYC
- 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 마련
  - › CBDC는 기관중심, 스타이블코인은 개인과 기업의 일반거래 중심
- 스타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거래상의 규제
  - › 스타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 정의,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/허가 요건 정비

# 발행인 요건 (1)

## ○ 기본적인 발행인격

- ›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,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격을 부여
- › 자본금 요건
  -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자본금 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
  -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(20억원 이상),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(50억원 이상), 은행법상 은행업(1,000억원,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)을 참고하여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
  - 향후 시장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발행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
- › 은행, 금융투자회사,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인가범위를 설정

## ○ 준비자산 구성 및 안전한 관리 의무 명문화

- › 1:1 이상 담보 의무화
  -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이상으로 상시 유지
  - 준비자산의 일정 비율을 현금, 예금 또는 고유동성자산으로 구성할 의무 부과
- › 신뢰성높은 신탁기관을 통한 준비자산 및 관련 준비금 관리
- › 유사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 한정

# 발행인 요건 (2)

## ○ 적정한 사업영위 능력

- ›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장비, 그 밖의 물적 설비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기준 충족

## ○ 무인가 발행행위 금지
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지

## ○ 백서 제출 의무
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(백서)를 금융당국에 제출
  - 스테이블코인의 총 발행한도, 유통량 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 등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작성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공시

#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

## ○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장치 마련

- ›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 명문화
  -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보장은 발행인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파산 시에 대비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장치
  - 발행인에 대해 이용자가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
  - 준비자산을 외부에 분리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분리보관된 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
- › 발행/소각 메커니즘의 투명성 확보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
  - 상품설명서의 공시 및 제출 의무
  - 발행인에 대한 사항(발행인의 성명, 재무건전성, 금융회사 유형 등), 이용자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, 준거자산의 종류 및 보관 방법, 스테이블코인이 이용하는 분산원장기술의 내용과 거래 수수료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제
  - 스테이블코인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취소,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

# 손해배상 책임 및 이자지급 금지

## ○ 손해배상 책임
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백서 또는 상품설명서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발행인에게 부여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을 발행인에게 부여

## ○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할 필요

- ›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(금전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)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

#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

-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, 이용자 보호, 자금세탁방지 고려
  - ›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, 이용자 보호,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·감독 주체의 지정이 필요
  - ›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등록된 디지털자산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매매, 교환, 상환 등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
    - 발행인 요건: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해당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그 자산이 발행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
    - 준비자산 요건: 발행인은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법률 또는 이 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적절한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함
    - 국내에서 역외 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
    -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
    - 유통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단,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

## ○ 금융당국에 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

- ›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,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
- › 금융당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, 자료의 제출, 증인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## ○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

- › 한국은행에 통화정책의 수행,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검토할 수 있음
- › 한국은행에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검토할 수 있음

# 후속조치: 특금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정비

## ○ 발행 및 상환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

- › 특금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특금법 적용대상 '금융회사등'에 포섭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
  -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중
- ›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을 위한 이용자의 지갑을 등록할 경우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
  -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이용자의 지갑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고객확인이 완료된 지갑을 통해서만 이용자의 발행 및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- › 대규모 자본이동,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국외 이전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필요
  - 개인이 사망한 경우, 그가 보유하고 있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국외 지갑 주소 등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
  - 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명의로 특정기준을 초과하여 국외의 지갑 주소 등으로 발행되거나 그로부터 상환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지갑에 대해 일시적 거래정지, 상환보류,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

# 후속조치: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거래상의 규제 (1)

## ○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 정의

- ›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 외국환 거래관련 규정을 수정할 때는, 자본유출입 통제, 환율 안정성, 통화주권 보장, 국제 기준 조화 등을 고려
  -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,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자산 흐름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
- ›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외화표시 자산으로 간주할지 여부 명확화
  - 예를 들어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"외환 또는 외화자산" 으로 간주하고 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"국내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" 으로 분류
  - 외환 관련 통제/신고/허가 요건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
- › 외국환거래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유형별 외환 분류 기준을 신설

# 후속조치: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거래상의 규제 (2)

## ○ 해외 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/허가 요건 정비

- › 현재 외환거래는 일정 금액 이상 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자금이전시 동종/유사절차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
- ›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도 사실상 외환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외환당국에서 외환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
  - 스테이블코인 송금/수취 거래의 등록·신고 요건 마련
  - 특정 기준(금액, 용도, 국가 등) 초과 시 금융정보분석원(FIU) 통보 연계

## ○ 자본유출입 통제 메커니즘 반영

- › 역외 유출입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거래로 분류할 수 있음 (예: 해외 투자, 증여, 대출 등)
- › 자본거래로 분류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 사전신고, 사후보고, 외환 감독기관의 감시 권한 부여를 검토할 필요



**Thank You!**